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3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정혜경 · 김준형 · 김재원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용혜인 · 최혁진 · 서미화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 10. (생략) <u><신설></u>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u> <u>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u>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u> <u>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u> <u>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u> <u>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u> <u>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u> <u>제3호에 규정된 죄</u> <u>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 <u>호에 따른 스톱킹범죄</u>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u><신설></u>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